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 규정 신설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835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 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2026년 3월 30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6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채불은 단순한 기업 내부의 계약 위반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사회보장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병폐로서,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되,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청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의 법인사업주가 형식적인 법인격을 방패로 삼아 구상채무와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있고, 그 결과 법인의 재산만으로는 대지급의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대지급금이 사실상 ‘기업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로 전락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유용·횡령·은닉 등 변제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행위를 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및 그 밖의 실질적인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법인격 뒤에 숨은 실질적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징수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법인의 재산 유용·횡령 등 변제금의 원인이 되는 임금등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자로서 무한책임사원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3(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금의 납부기한 만료일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변제금의 원인이 되는 임금등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

는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법인의 이사회,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의 결의

나. 법인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사원 또는 주요 임원의 선임

다. 법인의 사업 계획, 예산 편성, 재산의 처분 등 주요 경영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와 변제금의 원인이 되는 임금등의 미지급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재산을 유용·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여 법인을 무자력 상태로 만든 경우

2. 법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하여 변제금 납부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3. 자금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u>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등의 지급을 후순위로 미루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u> 4. <u>임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u> 5.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하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므로,²⁾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으로써 대지급금 지급분(변제금)을 회수하고 있음.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2)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그런데 최근의 대지급금 환수 실적을 보면, 2025년 29.7%로 저조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대지급금 지급액 회수율 >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지급금 회수율	32.8	32.2	31.9	30.9	30.0	29.7
도산대지급금 회수율	39.2	39.8	40.7	41.1	41.2	41.3
간이대지급금 회수율	12.8	14.6	16.0	16.4	17.0	18.1

*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가운데,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가 형식적인 법인격을 내세워 구상채무의 이행의무를 회피하는 등 법인의 재산만으로 대지급금의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역시 회수율을 높이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³⁾이 있음.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변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현행 「국세기본법」과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에게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여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⁴⁾는 국가의 특유한 공법상 채권인 조세

3) <임금채권 회수 강화 관련 연구>,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2025. 12.

4)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채권의 원활한 수납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 곤란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부족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의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결의 등에 있어 실질적인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중 변제금의 원인이 되는 임금등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변제금 제2차 납부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표] 국세기본법과 개정안 비교

구분	「국세기본법」 제39조	개 정 안
납부 대상	국세 및 강제징수비	변제금(대지급금 상당의 미지급 임금등)
납부 주체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1.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2. 주주/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과 그의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 등)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	
	3.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	-
	-	2. 법인의 이사회,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의 결의/법인의 대표 이사 등의 선임/법인의 사업 계획, 예산 편성, 재산의 처분 등 <u>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추가 요건 없음	<u>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변제금의 원인이 되는 임금등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자</u>
부당한 행위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u>그 행위와 변제금의 원인이 되는 임금등의 미지급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u> 1. 법인의 재산을 유용·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여 법인을 무

		자력 상태로 만든 경우 2. 법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하여 변제금 납부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3. 자금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등의 지급을 후순위로 미루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4. 임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또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제39조와 마찬가지로 과점주주의 경우 변제금 총당에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의무를 진다는 점을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의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변제금 납부책임을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근로자가 법인에 임금채권을 청구하는 경우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 채권에 대한 대위행사 절차에서 자연인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국가를 법인에 대한 다른 일반채권자뿐만 아니라 피대위권리인 임금채권의 권리자인 근로자에 비해서도 합리적 사유 없이 우대하는 것으로 법적 정합성 및 형평성 면에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개정안은 변제금 제2차 납부의무자를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출자자보다 넓게 규정하면서, 법인의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결의 등에 있어 실질적인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중 변제금의 원인이 되는 임금등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변제금 제2차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결의 등에 있어 실질적인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 외에 누구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변제금 제2차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당한 행위”로 규정된 사항 중 ‘법인의 재산 유용·횡령 또는 부당한 처분’, ‘법인 재산의 은닉 또는 부당 이전’, ‘임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등은 수사나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판단할 것인지와 그 판단

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대지급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최근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 5월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민사채권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여 변제금을 공법상 특유한 채권의 회수절차인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즉, ①통지·독촉 등 국세 체납처분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대행에 관한 사항, ②법인의 합병·해산 등에 따른 납부의무 승계, ③공동사업자 등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 부과, ④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납부기한 전 징수 근거 등을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준용하였음.

현재 개정된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율이 어느 정도 제고되는지 등에 대한 성과를 지켜보면서 개정안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대지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세·공과금보다도 최우선 변제되기도 하는 만큼 그 보호의 필요성이 공법상 채권보다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고, 개정안은 이러한 임금 및 대지급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과점주주 등에 대한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입법취지이므로 그

취지에 공감하나, 법률체계적 정합성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일부 고려할 사항이 있는바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첫째, 법인의 출자자인 과점주주 등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는 주주유한책임 원칙 등에 비추어 공익상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원 채권자인 근로자의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대위권자인 국가에게 예외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법적 부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

둘째, 회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등 다른 채권과 달리 국가가 대위행사하는 임금채권만 주주유한책임원칙의 예외로 두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이 증권성은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한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법무부는 개정안과 유사하게 법인 출자자의 변제금 제2차 납부의무를 정하였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809호)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이 증권성은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한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538